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유효기간 재신고 안내]

-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25일로 만료됩니다.**

해 당 품 목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어린이용 온열팩,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해당 품목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서는 2017년 7월 26일 이전에 재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에서 수입통관 처리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의 법 조항이 신설(시행 2012.7.26)된 후 재신고 첫 시행이므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모든 어린이제품이 일시에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업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기간내 원활히 재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안내드립니다.

(1)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5년) 조항 신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개정 (시행 2012.7.26)

제19조 4항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2) 품공법에서 이관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동일하게 적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시행 2015.6.4)

부칙 제6조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3)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모두 5년 입니다.**

[어린이제품 신고확인증 유효기간 적용예]

■ 예시 1

2012.7.26 이전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안전확인)의 유효기간

: 품공법 개정규정 시행일(2012.7.26)부터 5년

	유효기간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일(발급일)이 2011.3.5 일 경우	2017.7.25

■ 예시 2

2012.7.26 이후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안전확인)의 유효기간

: 신고확인일(발급일)부터 5년

	유효기간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일(발급일)이 2012.8.5 일 경우	2017.8.4

[어린이제품 신고확인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예시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하단의 신고 확인일로부터 5년 입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자율안전확인신고서(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확 인 신 고 내 용					
⑥공산품명	⑦품목분류 번호(HS)	⑧규 격	⑨제조업체명	⑩제 조국명	⑪모델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⑫신고필증번호					
위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 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인)					
신고인 제출서류				주요요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 성검사결과서 1부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예시 2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 겸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단의 신고 확인일은 변경신고 일자이므로 최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1 참조)

FITI시험연구원(또는 해당 인증기관)으로 연락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 겸용)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확 인 신 고 내 용					
⑥공산품명	⑦품목분류 번호(HS)	⑧규 격	⑨제조업체명	⑩제조국명	⑪모델명
⑫변경신고 내용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안전인증기관장 귀하</p>					
⑬신고필증번호					
<p>위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안전인증기관장 (인)</p>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예시 3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또는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 신고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검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확인 신고 내용	어린이제품명	품목분류번호 (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제조사 제시 모델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신고확인증 번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장 직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급지 80g/㎡)

[어린이제품 신고확인증 재신고 절차]

■ 안전확인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규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고확인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fiti.re.kr/?sub_num=467)

시험/검사 접수	시험/검사 진행	시험/검사 완료
의뢰 제품과 신청서류 제출	품목별 개별안전기준과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신고확인증, 성적서 발급

(FITI시험연구원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https://www.fiti.re.kr/?sub_num=47)

■ 품목별 시료수, 검사소요일 및 담당자 안내

인증구분	품 목	시료 수	검사소요일 (주말, 공휴일 제외)	담당자 연락처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부만 해당)	2개 이상	10일	Tel : 02-3299-8065, 8067 E-mail : chohs@fiti.re.kr jh.shin@fiti.re.kr
	학용품	종류에 따라 2개 ~ 5개	10일	
	보행기	2개 이상	10일	
	완구	2개 이상	7일 ~ 10일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5개 이상	10일	Tel : 02-3299-8062, 8063 E-mail : megapass8838@fiti.re.kr hdpark@fiti.re.kr
	유아용 섬유제품	2벌 이상	5일 ~ 9일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1팩 이상	5일	
	유아용 캐리어	2개 이상	10일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4개 이상	35일		

-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검사소요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유효기간 재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